



2023.09.25.

국회미래연구원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79호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정치과정: 의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혜윤(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회미래연구원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79호

ISSN 2733-8258

발행일 2023년 9월 25일

발행인 김현곤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도서관 5층 국회미래연구원

Tel 02-786-2190 Fax 02-786-3977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단기 심층연구결과물로,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정치과정: 의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혜윤(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CONTENTS

I. 들어가며	05
II. 중대재해처벌법 의제화 과정	07
III. 법 제정의 정치과정	11
IV. 한국 입법과정의 특징	17

이 글은 『한국의 노동건강체제: 형성·구조·변화』(이상직·정혜윤·박상훈 편, 2022, 국회미래연구원)의 13장 “입법과정: 3당 보좌진의 경험과 인식(정혜윤)”과 한국 노동연구원 산업안전보건포럼의 2022년 3월 31일 발표문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정치과정: 의회의 역할을 중심으로(정혜윤·이상직)”의 내용 일부를 요약하고 보완한 것이다.

• 이 글은 2021년 1월 8일에 제정되어 이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 처벌법’)이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함. 내부자 시각에서 의회정치에 초점을 맞추어 과정을 충실하게 기술해 한국 입법과정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했음

-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에 깊이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고 있는 주요 3당의 의원실 보좌진과 정당의 당직자 6인을 면담한 내용을 토대로, 의제 형성-법안 발의-법안 심사라는 세 축에서 재구성

• 사회와 연계가 약한 정치, 조직이 아닌 정당

- 한국 사회에서 노동건강 문제는 오랫동안 정치 의제가 되지 못함. 2000년대에 들어서며 사회운동단체가 기업처벌법 제정 등 입법 운동을 시작하며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폐기

- 정당별 차이는 있지만 ‘중대재해를 어떻게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빈약했고 당론은 느슨하거나 합의 수준이 낮았음. 법안을 만드는 과정도 개별 의원실이 시민사회와 비조직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나, 정당이 조직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내용을 만들거나 일관된 방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정당이 조직된 의견을 형성하지 않으므로 국회의원 개인의 자율성이 높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대해 정당 간 견해차가 컸을 뿐 아니라 당내 이견도 컸음. 같은 정당 내에도 여러 법안을 발의하고 법안 심사과정에서 이견 조정이 동시에 진행. 결국 당대표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고, 민주당의 경우 대통령의 판단도 법제정의 중요 계기를 제공. 관료 역시 실무뿐 아니라 중요한 정책결정 행위자로, 이들을 통솔하는 행정부 당파성이 법 제정과 이후 집행에 영향을 미침

• 한국 정당은 유권자의 선호에 대한 반응성(Responsiveness)은 높다고 볼 수 있음. 오히려 정당의 응집된 의견이나 합의된 정책의 구체성이 낮기에 국회 심사과정에서 유권자 선호에 민감하게 반응해 비교적 신속한 심사를 거쳐 법률을 만들 수 있었음

• 다만 발의부터 심사까지 사회 이익을 집합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과정이 취약하니 법안 통과 이후에도 의견과 평가는 엇갈리고, 유권자에게 약속한 정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정당의 책임성(accountability)은 낮아짐. 여야 합의 법안임에도 법취지와 다른 개정법이나 시행령을 둘러싼 혼란이 거듭되는 등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음

• 국회는 복수 세력에 의해 운영되는 공동통치 기관으로 행정부처럼 빠른 결정과 집행이 어렵지만 다종다양한 시민 세력의 대표에 의해 조정된 권위 있는 최종 결정으로 힘이 실릴 수 있음. 국회에서 만든 법률조차 여론의 변화와 행정 권력의 당파성에 좌우되거나 합의 자체가 불완전하면 구성원의 책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일하는 시민이 죽고 다치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되려면 노동건강 법 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만으로 충분하지 않음. 중앙당이 어떻게 시민의 선호를 집합하고, 정치가 갈등 조정과 중재라는 본래 역할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

I. 들어가며

- 이 글은 2021년 1월 8일에 제정되어 이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함
 -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하나의 법으로 포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구체적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률. 법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아직 엇갈리나, 사회적으로 생명과 안전이 양보할 수 없는 중요 가치임을 확인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운영과 행정 및 사법 체계의 전환점을 제공
-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정을 의회정치를 중심으로 설명
 -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이 법에 관한 사회적·학술적 관심이 커졌고, 법제 성격을 해석하고 그 효과를 전망하는 법학 논의가 공론장의 대부분을 이룸
 - 그에 비해 법제정 과정을 다루는 논의는 많지 않음. 전문가를 포함한 사회운동 단체, 노동조합, 진보 언론과 정치세력 등 폭넓은 연대 활동에 주목(이상윤, 2021; Kim and Ruggiero, 2021)하거나 비교적 상세하게 정치과정을 밝히는 연구(조성재, 2021; 홍정우·이상희, 2022)도 의회정치를 하나의 자율적 영역으로 분석하진 않음
 - 이 글도 사회운동의 역할이 컸다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 다만 단순히 운동의 압력이 강할 때에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아니고, 의회가 사회 요구를 투입해 수동적으로 산출하는 기관도 아님. 국회는 다른 행정 부처와 달리 정견이 다른 복수 세력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으로 법률은 상임위-소위-상임위-법사위-본회의까지 길목 하나하나 구성원 간 합의를 거쳐야 법안 통과가 가능. 더욱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법으로 개정법보다 여러 절차가 필요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의제가 여러 관문을 뚫고 법률이 제정될 수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 의회정치를 독립된 공간으로 분석할 가치가 존재
 - 본고는 의회정치에 초점을 맞추어 내부자 시각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발의·심의·의결된 과정을 최대한 충실하게 기술해, 우리 입법의 정치 동학과 정당정치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함
 -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에 직접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고 있는 의원실 보좌진과 정당의 당직자 6인을 면담하고 노동안전 운동과 입법과정에 깊게 관여했던 전문가 1인을 추가 면담해 수집한 자료를 활용했으며, 국회 법안 심사 회의록 및 관련 연구 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
 - 자세한 명단은 <표 1>을 참조
 - 조사는 총 6회에 걸쳐 주요 3당의 보좌진 5인과 당직자 1인을 대상으로 진행
 - 사전에 반구조화된 질문지에 기반해, 각 1시간 내외로 진행
 - 심층 인터뷰 이전 파일럿 인터뷰로 민주당 사무국 2인에 대한 조사도 30분 진행(2022.6.9)

- 노동안전 운동과 입법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전문가 추가 인터뷰(2023.7.4, 인터뷰 참여자 G)
- 인터뷰에 응해준 보좌진과 당직자의 경험과 의견은 해당 정당이나 의원실의 의견을 대표하진 않음. 사안의 성격상 소속 정당 및 개인 경력과 인식에 따라 견해차가 클 수밖에 없음
- 그럼에도 보좌진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을 뒷받침하고 조력하는 그림자조직으로 역할이 크고 실질적으로, 이들의 인식과 경험은 입법 전반을 좌우할 수 있음

<표 1> 인터뷰 참여자 현황

면접참여자	소속	일시	관련 경력
A	더불어민주당	22.6.30	8년 이상(19~21대 국회)
B		22.7.22	3년 이상(20~21대 국회)
C	국민의힘 ¹⁾	22.8.16	8년 이상(19~21대 국회)
D		22.8.30	5년 이상(20~21대 국회)
E	정의당	22.7.12	5년 이상(20~21대 국회)
F		22.7.12	5년 이상(당직)

- 인터뷰 내용을 시민사회와 정당 간 연계를 통한 의제 형성-발의-심사라는 세 축에서 재구성
- 2장은 2000년대부터 기업처벌법 운동이 시작된 이래 2020년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국면이 형성되기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과정을 서술
- 3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국면에 초점을 맞춰 인터뷰를 재구성
 첫째, 정당이 시민사회와 느슨하거나 불완전한 연계 속에 사회 이익이 어떻게 정치영역으로 투입되는지 검토
 둘째, 발의와 심사과정에서 정당 내부와 정당 사이 대립과 합의 과정을 파악해 조정의 정치과정을 알아보고, 누가 영향력 있는 행위자인지 파악
- 4장은 분석 결과와 함의를 정리

1) 국민의힘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입법과정에 직접 관여한 법사위소속 보좌진 인터뷰가 어렵고 중앙당 내 노동정책 당직자가 존재하지 않아 산안법 개정에 참여했거나 환노위 사정을 잘 아는 보좌진과 인터뷰를 진행

II. 중대재해처벌법 의제화 과정

- 한국사회에서 노동건강 문제는 오랫동안 정치 의제가 되지 못함.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다루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1981년에 제정되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며 본격적으로 기존 제도 한계가 인식되기 시작함.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되기까지 다양한 사회단체가 입법운동을 전개

1. 사회단체의 입법운동과 법안 발의

- 2001년 노동자가 사망하면 그 책임을 최고경영자에게 묻는 ‘입법 청원 운동’이 시작²⁾
 - 노동건강 운동단체인 ‘노동건강연대’가 2001년부터 반복되는 중대 재해를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
 - 2003년 ‘기업살인법’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고 팀을 조직해 유사 해외법 사례를 소개
 - 2006년 노동건강연대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살인기업선정식’을 실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살인법 제정의 필요성을 여론화
 - 2008년 이천 냉동창고에서 40명의 건설노동자 사망 등 비정규·하청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건이 계속 이어짐
 - 2012년에는 민주노총이 주축이 되어 민변, 노동건강연대와 함께 법률팀을 구성해 ‘기업살인법’논의를 공론화하고 본격적인 입법 운동을 전개
- 운동의 흐름이 처음 의회에 반영된 시기는 19대 국회(2013년~)
 - 2013년 5월 28일 경영자 책임 강화를 담은 한정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6월 26일에 심상정 의원(정의당) 등 10인이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기업살인처벌’이란 표현이 처음 담긴 법률안도 12월 24일에 김선동 의원(통합진보당) 등 11인이 발의
 - 2014년 세월호 참사, 삼성 백혈병 운동, 가슴기살균제 참사 등을 겪으면서 이후 생명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정치적 논의가 촉발
 - 4.16연대, 가슴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등 21개 사회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를 출범시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청원법안을 2015년 8월에 제출

2)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운동사는 주로 이진우(2021)를 참고

-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가 열리고, 2020년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들이 공약에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을 명시
- 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문제의식을 담은 법률안을 수건 발의

○ 19대, 20대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 법안은 제대로 심의되지 않고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

<표 2> 19대·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기업 의무와 처벌강화를 담은 법률안

대	발의자(대표발의자 정당)	법안명	제출 시기
19	한정애의원(새정치민주연합)등 18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2013.5.28
19	심상정의원(정의당)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2013.6.26
19	김선동의원(통합진보당) 등 11인	기업살인처벌법안	2013.12.24
19	청원입법(4.16연대 산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제정연대)	시민, 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 정부 책임자 처벌법	2015.8.3
20	심상정의원(정의당)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2016.6.7
20	김중훈의원(무소속) 등 13인	산업안전보건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2016.11.17
20	노회찬 의원(정의당) 등 11인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2017.4.15
20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등 11인	기업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2018.11.5.

2. 불연속의 법제정 일지

○ 법안이 발의되어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음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민주당의 일관된 정책 방향은 아님
-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후보는 ‘중대사고 기업처벌법’을 공약으로 제시³⁾
-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 2019년 2월故김용균씨 유족을 위로하는 청와대 면담을 진행하며 유가족이 요구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해 답변하지 않음⁴⁾
- 2020년 21대 총선 민주당 공약에는 사망사고 다발사업장에서 원청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은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직접 언급하지 않음

3) 문재인미터 공약체크 프로젝트(http://moonmeter.kr/detail.jsp?sp_no=97), 정의당 선거공약 https://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html?bbs_code=JS56&num=89561) 등 참고

4) 김윤나영, “고김용균 유족 위로한 문대통령 처벌법 요청엔,” 프레시안 뉴스(2019년 2월 18일)

- 민주당에서 '산안법 재개정'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부정적이거나 유보적
- 20대 국회 종료 직전 2020년 4월 30일 38명이 사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
- 2020년 5월 17일 13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를 발족, 활발한 제정 운동을 전개
- 3당 보좌진과 여야 당직자 모두 대형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것이 입법의 중요 동력이었다고 밝힘
- 지난 7년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되었으나, 중대사고 발생하고 사회단체들이 활발한 제정운동을 펼쳐 여론이 조성, 이것이 법 제정 직접적 계기가 됨
- <표3>의 법 제정 일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고후 9개월, 발의후 7개월 만에 법 제정

<표 3>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일지

(1단계) 발의·제출	2020.6.11.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 14인이 1호 법안 발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2020.8.22.	국회 입법 청원, 한달 후 10만 명 달성해 국민동의청원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
	2020.11.12.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45인 법안 발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2020.11.17.	민주당 장철민 의원 등 12인 법안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1.17.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11인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2020.12.1.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등 10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
	2020.12.14.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12인 법안 발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2단계) 심사	소위원회 심사: 상임위원회에 해당 법률안이 상정되면 전문위원의 검토 후 심사	
	2020.12.24.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 심사 돌입
	2020.12.29.	정부 부처(법무부, 고용부 등) 협의안 토대로 심사
	2021.1.6.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중기부 입장 반영)
	2021.1.7.	국회법안 소위 통과

(3단계) 의결	상임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심사 보고하고 찬반 토론 후 의결	
	2021.1.8.	법제사법위원장 대안(5개 의원발의안 통합안) 제출 체계·자구 심사 반영해 의결
	2021.1.8.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4단계) 제정	2021.1.15.	정부 이송
	2021.1.26.	공포
	2022.1.27.	시행(50인 미만/건설업은 50억 미만 사업장은 2년 후로 유예)

* 출처: 국회 입법 정보 통합검색(<http://likms.assembly.go.kr/nsrch/main.do>)

- 중대재해처벌법은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라는 1단계에서 나아가지 못했음
- 20대 국회 종료 직전 이전 물류센터화재 발생하고, 21대 국회가 시작(2020.5.30)된 이후 약 6개월간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을 시작으로 민주당에서 3건, 국민의힘에서 1건으로 총 5건의 중대재해처벌법이 발의되었고, 유사 내용을 담은 산안법개정안 1건과 국민청원안도 1건이 제안
- 이후 12월 24일부터 심사가 시작되어, 2주 후 2021년 1월 8일 본회의를 통과

○ **중대재해처벌법 이전 2018년 12월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개정안도 중대사고 발생, 사회운동으로 여론 형성, 속도전에 가까운 심사라는 즐기는 유사**

- 19대 국회에서 2013년 5월 위험의 외주화 방지 취지를 담은 산안법 개정안이 최초 발의되었으나 폐기
- 20대 국회가 시작되고 2016년 6월 7일부터 총 27건의 유사한 문제의식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2018년 12월 10일 김용균씨 사망사건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법안 소위에서 1회만 논의, 여야 의석수가 비등하고 노사 간 의견이 첨예해 개정 가능성은 낮았음
- 그런데 김용균씨 사망사건 이후 12월 17일 시민대책위가 발족하고 같은 달 19일부터 산안법개정안이 법안소위 및 공청회까지 포함해 약 1주일 만에 완료(21일 공청회, 24일과 26일 법안 소위 심사). 사망사고 후 20일이 안 되어 법안이 처리되며 국회 심사가 신속하게 완료
- *면접자 C*는 산안법도 김용균씨 사망을 계기로 환노위에서 빠르게 법안이 통과된 것 같다는 의견을 밝힘. 국민의힘도 당차원에서 산안법 개정안을 별도로 만들어 병합 심사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법안을 발의하기 이전 환노위에서 심사가 먼저 진행되었다고 술회
- *면접자 D*는 법안을 발의하면 작동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중간 교류와 숙성의 기간이 필요한데 산안법은 보름 가까이 밤낮없이 일해 급박한 일정으로 개정해야 했던 경험담을 설명. 좀 더 숙성시간을 가지고 개정하거나 강화했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의견

표. 법 제정의 정치과정

1. 정당-시민사회 간 연계

- 중대재해처벌법 국면에서 주요 3당은 주도권을 가지고 시민사회와 조직적으로 연계해 의제를 형성하거나 조정했다고 보기 어려움. 일관된 정책을 만들거나 이를 다루는 당 기구나 위원회 등의 조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
 - 해당 이슈에 관심이 있는 의원이나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과 시민사회 영역 간에 느슨한 네트워크가 형성됨. 중대 사고가 발생하며 시민사회에서 입법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후 국회 심사가 시작되며 구체적 당론도 결정

1)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은 비교적 시민사회와의 접점이 넓고 당 조직 기구와 시민사회 간 조직된 연계가 존재하나 제정법 국면에서는 느슨한 네트워크에 가까움
 - 첫 번째 축: 민주노총 등 시민 재해 및 유가족단체가 연합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21대 국회의 의원 연구단체⁵⁾인 '생명안전포럼' 소속 민주당 개별의원 간 네트워크
 - '생명안전포럼'은 21대국회 여야 12명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⁶⁾로 민주당 의원은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이 중심이고, 그 중 3인은 중대재해처벌법 법안을 대표 발의
 -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민주노총을 비롯해 세월호와 가슴기 등 유가족단체가 중심이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이하 제정본부)'와 협력해 정책네트워크를 형성. 다만 개별 의원이 시민사회 요구를 반영하는 느슨한 틀로, 정당 내 노동안전 문제를 다루는 특정 그룹(파벌)도 아니고 시민사회 요구를 조직적으로 반영하는 체계도 아님
 - 포럼 소속 의원 대부분은 '중처법 제정파'였지만 이들이 직접 당내 '산안법 강화'를 주장하는 의원들과 차이를 조정해 '제정법'으로 당론을 정했다고 보기 어려움. 민주당 의원은 각자 다른 생각을 그대로 담아 법안을 별도 발의

5) 국회의원의 연구단체는 소속 정당을 초월해 관심 분야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위해 1994년부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개 이상의 교섭단체(비교섭단체 포함) 소속 의원 10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1인이 3개 연구단체를 초과해 가입할 수 없다. 21대 국회에는 2020년 7월 27일 기준 총 54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음(국회 홈페이지, 연구단체 안내, 검색일: 2022.9.22)

6) 대표의원은 민주당의 우원식, 연구책임 의원은 민주당의 오영환, 이탄희, 구성 의원은 정의당 강은미 1인, 국민의힘 김기현 각 1인 외에, 민주당의 박주민, 이재정, 이정문, 이해식, 임호선, 진성준, 최혜영 등 7인으로 구성(국회 홈페이지, 연구단체 안내, 검색일: 2022.9.22)

- 제정본부 등 시민사회와 민주당 사이를 조직적으로 이어준다고 하기도 어려움. 가령 제정본부는 '산안법 개정파' 의원과 중대재해처벌법 실제 내용에 관여하는 법사위의원을 만나 직접 설득하고자 했으나 불가능했음. 결국 노동안전 전문가 개인 인맥을 활용해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설득을 시도(면접자 G)
- 두 번째 축: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2012년 민주통합당을 공동 창당했던 역사가 있어 조직적 이해와 요구를 투입이 가능
- 중앙당 내 집행기구인 전국노동위원회, 원내 52명의 노동존중의원 실천단, 분기별 고위급정책협의회, 노총과 민주당의 가교역할을 하는 당 사무처 노동대외협력국⁷⁾ 등을 통해 수시로 법안을 논의하는 형태가 제도화되며, 노동안전의 제에 대한 논의도 가능해짐
-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초기 다소 유보적이거나 온건한 입장
- 제정본부나 민주노총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초기 의제와 여론 형성에 주도권이 있었다면, 한국노총은 실제 법안 심사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치 자원을 활용해 영향력을 발휘
- 관련 의원실 보좌진이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다시 제정연대에 안건을 보내 조율하고, 정부에 초안을 보내 의견을 받는 식으로 진행(면접자 A)

2) 국민의힘

○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비교해 노동정책에 대한 당내 의원 간 정책적 거리가 큰 편

- 그런데 당내 의제를 취합하고 조정하는 당내 기구, 의원 모임이 없어 노사 양쪽과 조직적·공식적 연계가 취약, 단체와 소통하고 대리하는 개별 의원의 역할이 중요.
- 사용자단체는 국민의힘 해당 상임위에 자신의 요구를 배포하거나 정보 유통에 집중하거나 특정 분야에서는 의원실 간 협업을 제안하기도 함. 그러나 전반적으로 노동조합에 비해 가시적 영역에서 정당과 접촉하거나 정치적 요구에 적극적이라 보기 어려움. 통상 사용자단체와 국민의힘과 거리가 가까울 것으로 예상하나 조직적으로 이해를 투입하기 보다 개별 의원실과 접촉이 일반적(면접자 C)
-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단체는 집단적 의사 표현에 더 소극적. 정보 자체에 어두운 탓도 있으나 자칫 세무조사 등 혹 정부 타깃이 될까 자제한다는 해석도 있음(면접자 D)
- 한국 중소기업-중소상공인이 결사 자체가 미진해 정당과 조직적으로 연계하는 루트가 취약하고, 행정부로부터 자율적이지 못한 환경을 시사
- 국민의힘 내 비교적 연계가 있는 노동 섹터는 한국노총이지만 민주당과 한국노총의 관계처럼 정례적 정책협의나 공식적 연계보다 노총 출신 의원 개개인의 느슨한 네트워크에 가까움

7)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혜윤·송태수(2021: 85-93) 참고

- 국민의힘 내에도 노동 부문 기구로 노동위원회가 있으나 정책적 영향력이 거의 없어 정책조정위원회의 환노위 간사의 역할이 중요⁸⁾
- 중대재해처벌법뿐 아니라 산안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당내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으나, 한국노총 출신 환노위 위원이 중심이 되어 다른 의원은 물론 원내대표까지 적극 설득해, 합의-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함(면접자 D). 다만 개별의원의 정치력에 의존하고 있어 중앙당 차원의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

3) 정의당

- 정의당은 비교섭단체로 거대 양당에 비해 원내 가용 자원이 적어⁹⁾ 사회단체와 연대를 통해 시위, 청원 등 사회운동 자원이 중요한 입법 동력
- 정의당도 시민사회의 요구를 조직적으로 반영할 경로가 취약하고, 정파 갈등 탓에 민주노총과 정의당의 중앙수준에서 협력은 용이하지 않음. 오히려 정의당이나 민주노총 중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양측 모두 연대에 부정적 기류도 존재
 - 그럼에도 공식적·제도적 조건보다 진보 진영의 느슨한 인적 자원이 작동해 제정본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원내에서 역할 분담과 협력이 가능했음. 강은미의원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노동안전 문제에 관심이 깊음. 의원실에는 20대 때부터 노동문제를 담당한 노무사 출신 보좌진이 존재. 정의당 내 사무처에도 민주노총 출신으로 수년간 노동문제를 담당한 국장이 시민사회 진영과 이견을 조정하고 연대를 꾀했고, 이들을 정무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동부대표와 당대표가 존재했기에 주요 3당 중 가장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임할 수 있었음

2. 발의: 정당 내 조율

-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은 2020년 '노회찬 의원 발의안'을 토대로 법안을 발의했고, 제정운동본부는 청원안을 별도로 만들어 10만인 청원 운동을 전개
 - 양자가 각각 국회의원안과 국민청원안¹⁰⁾을 발의한 이유는 정당과 사회운동 진영이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면접자 E)

8) 국민의힘의 노동위원회는 27개 중앙당 상설위원회 중 1개 위원회로, 총 50인 중 노동위원장을 비롯해 42명이 한국노총 출신이다. 시기별로 노동정책 이슈가 있으면 회의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최고위원회에서 발제를 할 수도 있음. 다만 한국 주요 3당 노동기구의 정책 영향력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에 의하면, 두 정당에 비해 노동위원회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정혜윤·송태수, 2021: 96, 105)

9) 가령 중대재해처벌법 법안 심사한 법사위에 정의당 의원이 없었음. 21대 국회 상반기 환노위 고용노동 법안심사 소위에도 참여 하지 못함

10) 국회청원은 법률안과 동일 절차로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어 유사 내용을 가진 법률안과 함께 심사되기에 일반 민원(진정)과 위상이 다름. 박선민(2020: 195-196)은 이런 점에서 국회 청원은 한정적이거나 입법, 정책 제언, 제도개선 등 주로 문제를 '공적 영역'에서 해결하는 시도가 볼 수 있는 반면, 청와대 국민청원은 기존의 청원·민원 제도의 절차와 규범을 파괴하고 시민이 오로지 대통령을 향해 읍소하게 만드는 등 '실체적 변화'를 이끄는 정치적 역할과 거리가 멀다고 설명

○ 민주당은 처음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방향을 정한 게 아님

- 중대재해처벌법도 강조점에 따라 차이가 있는 의원법안 3건을 발의
- 산안법에 처벌조항을 넣어 개정하자는 장철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안법 개정안도 당내 의견의 핵심 축을 형성
- 산안법 재개정이 보다 현장 적합성이 높고 실효성이 있다는 의견, 나아가 실제 심사에 들어갔을 때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판단도 존재
- 즉 당론이나 방향을 느슨하게 정하고 국회 심사에서 견해차가 있는 의원이 발의안을 각자 내, 법안 심사과정에서 정당 간 차이뿐 아니라 당내 견해차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
- 오히려 민주당 내 주된 흐름은 산안법 강화였기에 제정운동본부가 추동해 142명의 직업환경의학과 의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하기도 했고, 관련 전문가가 직접 국회의원을 만나 설득하기도 했음(면접자 G)

○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행위자는 3당 보좌진 모두 당(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힘

- 노동문제에 나름 합리적 입장을 가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표가 되어 취임 직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약속했고, 이것이 가장 큰 동력이었다고 민주당·정의당 보좌진들이 밝힘
-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찬성 입장을 밝히자 이어 문재인대통령도 민주당에 전향적 입장 변경을 요구하고, 정부 부처에도 과도한 법 내용은 조정하되 법 형식에 묶여 법정제 자체에 소극적이면 안된다며 국회 입법과정에 참여할 것을 지시. 문대통령의 요구가 민주당 당론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정해지는 계기가 됨(홍정우·이상희, 2022: 429-430)

○ 결국 정의당을 제외하면 여야 노동안전 문제에 있어 정당 간 거리만이 아니라 정당 내 견해차도 컸다고 볼 수 있음. 처음부터 정당 정책에 입각한 '당론'이 있기보다 심사과정에서 정당별 차이뿐 아니라 같은 당 의원의 견해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

3. 심의: 정당 간 조율

1) 법안소위 심사과정

- 법안 실제 내용이 결정되는 절차는 상임위의 법안 소위 심사과정임. 법안소위는 정당 간 조정은 물론이고 당내 견해차를 통합하고 실질적 조정이 이루어짐. 법안소위는 통상 만장일치 통과를 관행으로 하며 표결을 거치지 않으나, 전원 합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음¹¹⁾
- 기존에 산안법 등 노동건강 법률을 다루던 한노위가 아니라 법사위에서 심사가 이루어진 것이 중처법 제정과정의 또 하나의 특징

11) 2018년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에서 소위 위원 중 반대의견을 가진 의원이 여당 내에도 존재했고 정의당 이정미의원도 공개적으로 반대했으나 강행 처리되며 본회의를 통과함. 2022년 9월 16일 '양곡관리법', 2023년 2월 15일 '노란봉투법'도 합의가 불발되며 다수파가 의결

- 민주당과 정의당 보좌진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발의 사실 자체가 입법의 큰 동력이 되었다고 밝힘
- 여야 간 의견이 참여할수록 상대당에 유사한 의견을 가진 공동발의자가 있으면 소위에서 협상의 근거가 되며, 대표 발의한 법률이 있으면 더 힘이 실린다고 설명(면접자 C)
- 국민의힘도 본인들 발의 법안이 있어야 병합심사를 통해 법안 조문을 결정하는 세부 논의에서 자당의 발언권이 생길 수 있음. 그러나 환노위가 아닌 법사위에서 법안이 심사되며 임이자 의원은 세부 심사 내용에 관여할 수는 없었음
- 발의 단계의 경우 법정외의 필요를 피력하는 시민사회 진영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면, 소위 심사는 제정법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었고 공청회도 사용자단체를 비롯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우려를 표한 학자의 의견을 주로 청취(면접자 B)
-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진영의 요구나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의 의견이 배척된 것은 아님. 강은미 의원은 법사위 구성원은 아니지만 유가족과 국회 앞 한 달간 단식농성을 이어갔기에 예외적으로 상임위는 물론 법안소위에 배석했고 발언할 기회를 얻기도 했음(면접자 E)
- 심사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나 처벌 완화안은 제정본부 등 시민사회진영의 비판이 상당했음. 여당의 중진의원이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시민사회와 접점을 가지고 신뢰를 구축해왔기에 제정본부의 비토 의견을 끝까지 설득하고 막후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음(파일럿 인터뷰, 면접자 A)
- 면접자 B는 통상 소위와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심사과정이 공식적이고 실무적 차원에서 논의가 충실했다고 설명. 다만 이는 정당 내부는 물론 정당을 넘어서 서로 풍부한 의견 공유가 가능했다는 의미는 아닐 가능성도 존재
- 면접자 D는 환노위 위원 간 비공식적 정치과정의 중요성을 강조. 20대 환노위의 경우 의원들이 같이 공부하고 식사하며 노동계나 사측의 현장 상황을 솔직히 공유하는 시간이 많았고, 그 덕에 산안법 개정을 비롯해 서로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다고 설명
- 반면 산안법에 비해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에 노동안전 문제를 다루어오지 않았던 법사위에서 논의가 집중되었고, 심사 기간도 길지 않았음. 더욱이 민주당 법사위 위원은 기존에 노동안전 문제를 포럼이나 당내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문제의식을 공유해왔지만, 국민의힘 의원은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야는 물론 같은 당 내에서 충분한 소통이나 합의 형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2) 관료의 역할과 행정부 당파성

-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부, 산업부, 법무부, 공정위 등 복수 부서가 연관된 법률로 부처별 의견이 중요하고 관료를 통솔하는 행정부 당파성도 중요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과 부처가 입장을 바꾼 계기는 문재인대통령이 여당에 전향적 입장 변경을 요구하고 부처에는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해서임.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부처별 협의를 거쳐 세부 조문에 대한 정부 단일안을 마련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문별 검토 대안을 여당 정책위원회가 법사위원회에 제공(홍정우·이상희, 2022: 429-430)

- 국회심사 기록을 살펴보면 민주당의 발의안도 3개이고 정부발의안도 있어 국민의힘이 아예 정부·여당통합안을 요구했고, 관료가 협의안을 만들어 심사가 진행
- 부처 간 논의나 조정도 중앙당보다 박주민 의원실과 우원식 의원실을 중심으로 소속 상임위가 관할하는 부처 의견을 따로 받아 조율하기도 했음. 정당 정책위원회와 정부와 직접 조율하기도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법안에 관여하는 국회의원과 해당 의원실의 역할도 컸음
- 심사의 상당 부분은 주무 부처 차관이나 과장의 의견을 듣고 이들에게 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며, 타법과 충돌 및 실현 가능성부터 부작용까지 관료의 발언과 방향에 상당한 힘이 실림
- *면접자 C*는 노동안전 문제가 진전된 이유가 ‘노동존중 정부’를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 즉 행정 권력의 교체였다고 평가. 역으로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비판과 처벌완화 등 상반된 논의가 활발한 이유는 행정부가 교체된 영향도 있다고 언급

IV. 한국 입법과정의 특징

○ 사회와 연계가 약한 정치, 조직이 아닌 정당

- 한국 사회에서 노동건강 문제는 오랫동안 정치 의제가 되지 못함. 2000년대에 들어서며 사회운동 단체가 꾸준히 운동을 펼치고 입법운동을 전개하며 산발적 법안 발의가 있었으나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고 폐기
- 정당별 차이는 있으나 주요 3당은 사회 이익을 대표하고 정책을 형성하는 능력은 취약함. '중대재해를 어떻게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제도 논의는 빈약했고 당론은 느슨하거나 합의 수준이 낮았음. 중앙당 내 노동(안전)문제에 관련된 시민사회의 다양한 부분 이익을 수용해 조정을 거치는 당 부문 기구나 위원회의 역할은 허약하고 시민사회의 이해가 투입되는 경로도 빈약. 이익집단이나 사회단체와 정당 간 네트워크가 있어도 느슨하거나 개별 의원실의 역량과 의지에 기대고 있음.
- 정당이 조직된 의견을 형성하지 않기에 국회의원 개인의 자율성이 높음. 같은 당에서 각자 법안을 발의하고 법안 심사과정에서 정당 간 이견뿐 아니라 자당 의원 간 견해차도 동시에 조정

○ 높은 반응성(responsiveness)

- 응집되거나 조직된 정당의 의견이 빈약하고 구체적 정책에 합의 수준이 낮기에 오히려 유권자 선호에 민감하게 반응해 비교적 신속한 심사를 거쳐 입법이 가능했다고 볼 수도 있음. 중앙당 차원의 정책 방향이 뚜렷하지 않으므로 당대표 등 지도부의 전략적 선택과 자율적 판단이 가능. 한국 정당은 전반적으로 유권자의 선호에 대한 반응성 (responsiveness)은 높다고 볼 수 있음

○ 낮은 책임성(accountability)

- 다만 발의부터 심사까지 사회 이익을 집합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과정이 취약하니 법안 통과 이후에도 유권자에게 약속한 정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정당의 책임성(accountability)은 낮아짐. 법 통과 이후 국회에서 정책 수용자 집단에 전달할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만들거나 현장에 필요한 보완책과 개선책에 대한 논의는 빈약. 특히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참여한 것은 사회적 여론을 고려한 비상시기 당대표의 결단에 가까워 당내 합의 수준은 낮은 편.¹²⁾ 여야 합의 법안임에도 해당 법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하거나 법취지와 다른 개정법을 논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음

12) 2021년 1월 8일 본회의의 표결 결과를 검토하면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이었는데, 실제로 본회의에 올라가는 법안은 법안소위와 상임위에서 여야 간 조정을 거치기 때문에 반대나 기권표는 한자리수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법에 찬성하지 않은 의원이 100명 이상인 현상은 이례적. 물론 당시 정의당이나 민주당 의원 중 경영책임자 처벌 내용이 완화되었다는 맥락에서 기권을 택한 경우도 있으나 반대표와 기권표 상당수는 국민의힘 의원(본회의의 표결현황 [210724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행정권력과 국회 다수파가 동일하고, 대통령이 여당에 정책적 영향력이 높은 점이 법 통과
의 중요한 이유였다고 볼 수 있음. 바꾸어 말하면 법 제정 이후 행정권력이 교체되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상반된
관점에서 논의가 활발해진다고 볼 수 있음. 법 시행 주체인 고용노동부가 법률 취지와 다른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거
나¹³⁾ 윤석열대통령이 재계를 만나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¹⁴⁾ 혼란이 거듭되며 감당해야 할 사
회적 비용도 적지 않음
-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조항 자체 완성도나 타법과 정합성의 문제는 부분에 지나지 않을 수 있음. 문제를 공론장으로 끌어
낸 사회단체와 유가족, 문제해결을 위해 나선 국회의원의 심사가 부족했다는 의미도 아님. 그러나 지금까지 정책이 중앙
당 차원의 조직되고 집합된 내용이 아니라 개별 의원실이 대응해 법률을 만들고 국회 합의가 축적되지 않으면 책임 있는
집행으로 이어지기 어려움. 시민의 삶 전반에 해당하는 노동건강 문제조차 일종의 승자 전리품으로 받아들이기 쉬움. 당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차이를 조정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것이 이견의 억압과 비상시 최고권력의 결단에 가깝다면
안정된 당론이자 구성원에게 수용성 높은 정책이 되기 어려울 수 있음. 이후 대표 권력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 자체가
바뀔 수 있음. 논란 끝에 새로운 제도, 정책이 시작되어도 패자가 된 정당과 이들의 지지자나 사회집단은 받아들이지 못
할 가능성도 있음. 새 법과 제도, 정책이 시행될수록 적대는 쌓여가고, 다수파가 바뀌면 원점에서 재검토될 우려도 커짐.
국회는 복수 세력이 운영하는 공동통치 기관으로 행정부처럼 빠른 결정과 집행이 어렵지만 다중다양한 시민세력 대표
에 의해 조정된 권위 있는 최종 결정으로 힘이 실릴 수 있음. 국회에서 만든 법률조차 여론의 변화와 행정 권력의 당파성
에 좌우되거나 애초 합의가 불완전하면 구성원의 책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 일하는 시민이 죽고 다치지 않는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되려면 효과적인 노동안전 법 제도 자체를 논의하는 것만으로 충
분하지 않음. 중앙당이 어떻게 시민의 선호를 집약해 대안으로 만들고, 정치가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본래 역할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

13)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방향'을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경영책임자가 지켜야 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10개로 축소될 뿐 아니
라, 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험의 외주화 방지조항 등의 내용이 대부분 재계 요구를 반영하는 식으로 개정안이 입법예
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음. 김미영,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방향 입수해 보니"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대표이사
'면책'." 매일노동뉴스(2022.9.8)

14) "윤대통령, "중대재해법, 최대한 기업이 피해 안 입게 하겠다". 한겨레신문(2022.12.12)

참고문헌

- 김윤배. 2017. 『한국 산업안전 불평등 보고서』. 한울.
- 김중영·김희윤. 2013. “‘삼성백혈병’의 지식정치.” 韓國社會學 47(2):267-318.
- _____. 2016. “반올림 운동과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 경제와 사회 (109): 113-152.
- 박선민. 2020. 『국회라는 가능성의 공간』. 후마니타스.
- 유범상. 2009a. “1970년대 영국의 산업복지정치와 노동조합의 역할에 관한 연구: 진폐노동자보상제도(CWPS) 도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0(4):127-152.
- _____. 2009b. “한국의 산업복지와 노동조합의 역할에 관한 연구: 진폐특별법 제정과정(1984)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5(4):1-31.
- _____. 2013. “직업법의 복지정치 비교 연구: 영국과 한국에서 진폐증의 발생, 발견 그리고 보상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9(1):33-57.
- 이상윤. 2015. “노동자 생명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운동.” 의료와사회(1):120-123.
- 이상직·정혜윤·박상훈 엮음. 2022. 『한국의 노동건강체제: 형성·구조·변화』. 국회미래연구원.
- 이진우. 2021.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5):15-39.
- 정진우. 202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정에서의 법적 쟁점과 남겨진 과제.” 과학기술법연구 27(2):47-94.
- 정혜윤·송태수. 2021. 『한국정당의 노동정책 수용도 및 노동의 참여구조 비교분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조성재. 2021. “제5장 산업안전 문제와 입법을 둘러싼 거시 노사관계.” 조성재·전형배·김정우·김하나. 『법제도 변화 이후 산업안전 수준 제고를 위한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오민애. 202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사회적 의미와 과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의미와 과제 토론회 자료집.
- 제임스 뷰케넨·고든 탈러 저, 황수연 역. 2012. 『국민 합의의 분석』. 지식을 만드는 지식.
- 김경희·이조은. 2020. “왜 사람이 죽어도 솜방망이 처벌을 할까?-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최명선 인터뷰” 월간 복지동향 (263):54-59.
- 최정학. 2020.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노회찬 의원안)에 대한 몇 가지 제언.” 민주법학 (73):283-311.
- 홍일표. 2007. 『기रो에 선 시민입법』. 후마니타스.
- 홍정우·이상희. 2023. “중대재해처벌법 도입결정과정 분석과 법정정책 시사점.” 노동법논총 (55):409-441.
- Lee, Juyeon, Myoung-Hee Kim & Erica Di Ruggiero (2021) The corporate killing movement in South Korea: a critical realist analysis of social structure and collective agency, Critical Public Health, 31(2):156-168, DOI: 10.1080/09581596.2020.1838443

국가미래전략 Insight 발간현황

발행일	제목	작성자	vol
2023.09.25.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정치과정 : 의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혜윤	79
2023.09.11.	재생에너지 단계별 주요 갈등 이슈 분석과 시사점	정 훈	78
2023.09.04.	“트리플 트랜지션(Triple Transition)” -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그리고 국제질서 전환	차정미	77
2023.08.28.	한국사회는 외국인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 이민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시론	이상직	76
2023.08.14.	지역주민들의 미래예측과 비전의 유용성: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사례 연구	박성원	75
2023.08.07.	1인 가구 유형 분석과 행복 제고를 위한 시사점	민보경	74
2023.07.31.	민주화 이후 한국의 노동정치 - 한·미·일 비교 분석	정혜윤	73
2023.07.24.	공공정책은 누가 결정하는가? - 갈등적인 정책의제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상호작용 분석	박현석	72
2023.06.26.	국제질서의 변화와 공급망 전략	박성준	71
2023.06.05.	평화구축에 대한 서울지역 여성의 미래대화	김태경	70
2023.05.22.	좋은 사회로의 대전환 - 쉼사회에서 개성사회로 -	김현곤	69
2023.05.15.	2050년, 우리는 어떤 국제질서를 원하는가?: 세계질서 대전환의 7대 트렌드와 세계의 선호미래	차정미	68
2023.05.01.	만들어진 당원: 우리는 어떻게 1천만 당원을 가진 나라가 되었나	박상훈·정순영·김승미	67
2023.04.17.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소득과 고용 분야 정책지표: 현황과 과제	이선화	66
2023.04.10.	플라스틱 순환경제 시나리오와 미래전략	김은아	65
2023.03.20.	한국 청년은 언제 집을 떠나는가: OECD 국가 비교	이상직	64
2023.03.06.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새로운 전환점: 학습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과제	여영준	63
2023.02.27.	노동 안전 분야의 마그나카르타, 로벤스 보고서 누가, 왜, 어떻게 만들고 실현할 수 있었나	박상훈	62
2023.01.09.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	국회미래연구원	61
2023.01.02.	'양극화' 문제에 대한 국회의 대응	박현석	60
2022.12.12.	인재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방향: 학습지원 방향 및 진단지표 개발	성문주	59
2022.11.28.	청년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	민보경	58
2022.11.14.	탈석탄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시사점: 노동자 및 지역주민 대상	정 훈	57
2022.10.3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정책과 회복탄력적 혁신전략	여영준	56
2022.10.24.	일본의 청년정책: 한국과 비교의 관점에서	정혜윤	55
2022.10.17.	대통령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박상훈	54

발행일	제목	작성자	vol
2022.09.19.	이머징 이슈 탐색 플랫폼의 이해와 활용	김유빈	53
2022.09.05.	미래 인구구조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	유희수·우해봉	52
2022.08.22.	국내 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와 이해관계자 분석	정 훈	51
2022.08.08.	한국인의 분배 인식: '능력주의' 논의에 대한 시사점	이상직	50
2022.07.25.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적 전략 구상	이선화	49
2022.07.11.	1인 가구의 행복 분석	민보경	48
2022.06.13.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 분석: 소득 수준과 빈곤 경험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이채정	47
2022.05.30.	노동시장 취약계층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제언	성문주	46
2022.05.16.	미래 전망의 프레임과 개선안	박성원	45
2022.05.02.	'국가'와 '국민'을 줄여 써야 할 국회	박상훈·문지혜·황희정	44
2022.04.18.	기후변화 5대 영향 영역과 적응입법 아젠다	김은아	43
2022.04.04.	디지털전환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사회의 중장기 변화 전망과 시사점	여영준	42
2022.03.21.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시사점	이선화	41
2022.03.07.	타협의 정치와 갈등 관리: 한국 법인세율 결정과정 분석	박현석	40
2022.02.21.	대한민국의 미래와 교육: 교육아젠다 10선	김현곤	39
2022.02.07.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주요 결과	허종호	38
2022.01.24.	장애인 운동 20년, 장애 입법 20년: '이동권'에서 '탈시설'로	이상직	37
2022.01.10.	미래비전 2037 -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	김유빈	36
2021.12.30.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대응 산업지원 정책과제와 정책효과 분석	정 훈·여영준	35
2021.12.23.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 완화와 적응	민보경	34
2021.12.16.	저출생·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검토: 아동 및 노인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 시설의 분포 분석을 중심으로	이채정	33
2021.12.09.	청년층의 기업가정신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방향 탐색	성문주	32
2021.11.18.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편 전략	이선화	31
2021.11.04.	에너지수요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조해인	30
2021.10.21.	디지털화폐의 등장과 금융시스템의 변화 전망	박성준	29
2021.10.07.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바라보는 미래 정책과 국회	박현석	28

발행일	제목	작성자	vol
2021.09.16.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여영준·조해인·정 훈	27
2021.09.03.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정책 주요 이슈와 제언	성문주	26
2021.08.19.	어디 사는지에 따라 행복감이 달라질까? 도시와 비도시 지역의 행복요인	민보경	25
2021.08.05.	재난을 넘어, 혁신을 넘어: 미래를 위한 혁신 정책의 대전환	전 준	24
2021.07.22.	대량 문헌탐색 기반 이미징 이슈 도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분석 사례	김유빈	23
2021.07.08.	높은 자살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자살률	박상훈	22
2021.06.24.	선호미래로 향하는 우회도로	박성원	21
2021.06.10.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	김현곤	20
2021.05.27.	인구감소시대의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탐색	이채정	19
2021.05.13.	일하는 국회의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	조인영	18
2021.04.29.	행복조사의 필요성과 한국인의 행복 실태	허중호	17
2021.04.15.	국가장기발전전략 탐색에 따른 개혁의제 제언	이선화	16
2021.04.01.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여영준	15
2021.03.18.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정 훈	14
2021.03.04.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양상과 무역분쟁: GDELT를 중심으로	박성준	13
2021.02.18.	코로나19와 함께 한 1년: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허중호	12
2021.01.21.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진단 및 교육정책 과제	성문주	11
2021.01.07.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민보경	10
2020.12.24.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박성원·김유빈	9
2020.12.10.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여영준	8
2020.11.26.	기후변화 영향 대응현황 및 제언(국내 연구·정책에 대한 양적 비교를 중심으로)	김은아	7
2020.11.19.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	박성원·정영훈	6
2020.11.12.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김현곤	5
2020.10.15.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박상훈	4
2020.09.17.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	김홍범	3
2020.09.03.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박성원	2
2020.08.20.	2050년 대한민국 미래예측과 국회가 주목한 11대 국가 개혁과제	김유빈	1

• 이 자료는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nafi.re.kr) 및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